

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, 장서확충 및 독서·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제2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간단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화 실)